

의안번호	제228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17.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보 건 소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228호
----------	-------

제출년월일 : 2023. 11. 17.

제출자 : 예산군수

## 1. 제안이유

- 동 안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 한센병관리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협약체결로 사업 추진 중으로,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5조에 따라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명 : 한센병관리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4조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
- 「한센사업지침」(기관별주요업무) 질병관리본부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 필요성

- 일반 의료기관의 한센병 환자 치료 기피로 인한 치료시설의 부재
- 한센병의 지속적인 치료와 한센병 퇴치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위탁개요

1) 위탁범위 : 한센병관리 진료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위탁사무

- 한센병 예방 및 치료 사업
-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 사업
- 한센병에 관한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지원 사업
- 한센병에 관한 기술훈련 사업
-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 한센사업대상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강구 사업
- 일반 피부과환자의 진료 및 치료 사업**
-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사업**

3) 위탁기간 : 3년(2024. 1. 1 ~ 2026. 12. 31.)

4)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사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경쟁 도입에 어려운 경우)

5) 소요예산 : 년 23,000천원(군비 100%) ※예산군 분담금

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마. 성과평가 결과 : 우수[충청남도 14개시·군 일괄평가]

### 3. 추진현황

가. 최초위탁일 : 1994. 1. 1.

※ 매년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탁운영

나. 위탁기간

- 재 계약 : 매 3년간

다. 수탁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라. 주요실적(대상기간 : 2023. 1. ~ 2023. 10.)

구분	실적
이동진료	(한센사업대상자) 13명 / 연6회 이동진료 중 5회 완료
대중홍보	"복지"지 3,600부 배포, 홍보용 소책자 제작 및 240부 배부, 홍보물 180개 제작, 대중메체 홍보 9회
신환자발견사업	주민검진 150명
재활사업	특수화 6건 다리의지 1건 시력개선 3건 재활 및 간호 실비용구 6건 한센인 복지증진 후원 11건
외래진료(정밀진찰)	5명

### 4. 추진일정

○ 앞으로 추진계획

- 2023. 12. : 민간위탁 사무 예산군의회 동의

- 2023. 12.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12.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 현재 위탁 현황(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매년 협약으로 추진)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및 조례 :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붙임 2】

다.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적정성 검토 포함) : 【붙임 3】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적정성 검토

<참고>

<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현황 >

○ 기관 현황(2023. 10월 현재)

1)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424

2) 주요업무 :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 한센병 장애인의 재활치료사업
- 신규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일반피부과 환자의 진료 및 치료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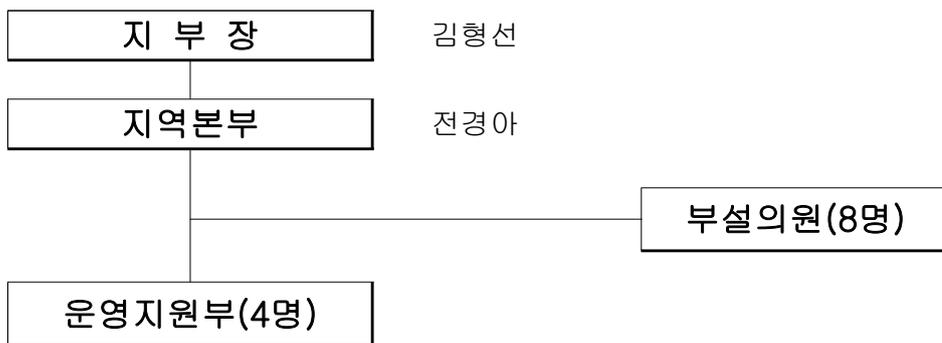
3) 구성원 :

- 대표자 및 임원 : 4명 (지부장1, 운영위원 3명)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지부장	김형선	○ 전)충청남도보건정책과장 ○ 현)김형선 행정사사무소 소장
운영위원	신일호	○ 충청남도청 감염병관리 과장
"	김진옥	○ 대전광역시청 감염병예방 팀장
"	조용희	○ 전) 홍성군 보건소장

- 위탁사업 수행 직원 : 총13명, 정규직10명, 비정규직 3명  
(본부장1, 부장1, 의사3, 간호사 등 전문인력 5, 일반행정 3)

4) 조직도



## 【붙임 1】 관계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항)**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붙임 2】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 세부산출내역

항 목	산출내역	지원현황(천원)		
		총사업비 (대전광역시도비,14개 시군비)	예산군 분담금	비율(%)
계		563,500	23,000	4.1
보수	인건비	380,295	20,533	5.4
의약품비	이동진료용 약품구입	72,250	1,068	1.5
국내여비	이동진료, 주민검진등 여비	11,695	374	3.2
일반수용비	홍보용품 제작, 사무용품 구입등	21,952	701	3.2
연료비	난방연료 구입	2,500	174	7.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60	150	6.9

※ 총사업비(지방비) 비용추계서 참조

구분	항목	소요 예산액	산출근거	지원현황(천원)			
				총사업 비	예산군 분담	비율(%)	
인 건 비	합계			563,500	23,000	4.1	
	인건비 (총계)			380,295	20,533	5.4	
	의 무 직 ( 1 명 )	소 계	129,533,040				
		급 여	50,928,000	·4,244,000*1명*12월( 17호봉)			
		상 여 금	15,915,000	·15,925,000원×1명			
		제 수 당	1,640,000	·1,640,000원×1명×12월			
		복리후생비	19,748,040	·1,645,670×1명×12월			
	전문직3급 ( 1 명 )	소 계	32,560,040				
		상 여 금	9,932,000	·9,932,000원×1명			
		제 수 당	2,880,000	·24,000원×1명×12월			
		복리후생비	19,748,040	·1,645,670×1명×12월			
	일반직(3급) ( 1 명 )	소 계	32,415,040				
		상 여 금	9,832,000	·9,832,000원×1명			
		제 수 당	3,300,000	·25,000원×1명×12월			
		복리후생비	19,583,040	·1,631,920×1명×12월			
	전문직7급 ( 1 명 )	소 계	32,560,040				
		상 여 금	3,701,000	·3,701,000원×1명			
		제 수 당	1,440,000	·12,000원×1명×12월			
		복리후생비	11,240,040	·936,760×1명×12월			
	기 관 부 담 금	소 계	169,406,040				
4대보험일부		36,146,040	·3,012,170원×12월				
기간제이사 ( 2 명 )		급여일부	·74,400,000 ·45,000,000	·6,000,000×1명×12월 ·1,631,920×1명×12월			
기간제기관 부 담 금	4대 보험 일 부	13,860,000	·1,631,920×1명×12월				

※ 지급기준 : 협회 보수규정 준용

구분	항목	소요예산액	산출근거	지원현황(천원)			
				지방비 (대전광역시 14개시군)	예산군금 예분담금	비율(%)	
의약품비, 여비 등	의약품비	소 계	72,250,000	72,250	1,068	1.5	
		이동진료	56,050,000	56,050,000(12개월)			
		도서지역 및 주민검진	16,200,000	16,200,000(12개월)			
	여비	소 계	11,695,000		11,695	374	3.2
		이동진료여	7,140,000	·15,000원×4명×72회=4,320,000 ·15,000원×4명×35회=2,100,000 ·15,000원×4명×12회=720,000			
		무의도서주민검진	1,260,000	·23,000원×5명×2회=1,260,000			
		불참환자추적, 업무협의를	240,000	·63,000×1명×12월			
		한세방과대학교육 [착암기반의사반의료위원반행정반]	1,275,000	·98,000×1명×2일 ·83,000×1명×1일 ·83,000×2명×2일×2회 ·83,000×1명×2일×2회			
		회의참석	1,780,000	·98,000×1명×1일×8회 ·83,000×1명×1일×12회			
		소 계	21,952,000		21,952	701	3.2
일반수용비, 의료구료비	일반수용비	리플렛홍보물 소품 제작 등	21,352,000	·21,352,000원(12개월)			
		무인경비, PC	2,400,000	·200,000원×12개월			
		폐기물 처리비	1,800,000	·150,000원×12개월			
	재활사업및 의료구료비	소 계	44,000,000		44,000	-	-
		보장구 (운동화검)	15,000,000	·250,000원×60건			
		안경	6,000,000	·25,000원×1명×12개월			
		보청기	1,300,000	·1,300,000×1건			
		재활살생구 등	10,900,000	·200,000×50건=10,000,000 ·150,000×6명= 900,000			
환자가정환경 개선 등	10,800,000	·1,000,000×2개소=2,000,000 ·200,000×40명=8,000,000 ·800,000×1회 =800,000					
차량비 공공요금 등	소 계	5,100,000		5,100	-	-	
	차량비	이동진료 차량유	5,100,000	·5,000,000원(12개월)			
		소 계	18,048,000		18,048	-	-
	공공요금 및 제세	1. 차량보험료 2. 자동차세	2,400,000	·700,000원×2대 ·500,000원×2대			
		1. 복지발송요금 2. 전기, 전화요금 등	15,048,000	·760×800부×6회=3,648,000 ·11,400,000 (12개월)			
		화재보험	600,000	·600,000×1회			
연료비		2,500,000	·2,500,000	2,500	174	7.0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난방연료입	2,500,000	·2,500,000	2,500	174	7.0
		기관운영비	2,160,000	·180,000×12월	2160	150	6.9
	재료비	검사시약 및 재료대	5,500,000	·5,500×1회	5,500	-	-

# 비 용 추 계 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전문기관의 진료사업 및 한센병환자 재활사업 지원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치료 및 재활 전문기관 위탁기간(2024.01.01.~2026.12.31./3년간)동안 매년 23,000천원 지원
  - 한센병관리사업비 매년 23,000천원으로 보조율은 군비 100%임.
  - 근거법령 「예산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
    -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 23,000천원 지원
4. 재원조달 방안 : 군비 보조금 예산 확보(군비 100%)
5. 작성자 : 예산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정이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4년	25년	26년	비고
합계	69,000	23,000	23,000	23,000	
인건비	61,599	20,533	20,533	20,533	
운영비	4,197	1,399	1,399	1,399	
사업비	3,204	1,068	1,068	1,068	

## III.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총사업비 (대전광역시, 도비, 14개시군비)	예산군 분담금	비율(%)
계		563,500	23,000	4.1
보수	인건비	380,295	20,533	5.4
의약품비	이동진료용 약품구입	72,250	1,068	1.5
국내여비	이동진료, 주민검진등 여비	11,695	374	3.2
일반수용비	홍보용품 제작, 사무용품 구입등	21,952	701	3.2
연료비	난방연료 구입	2,500	174	7.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60	150	6.9

구 분	예산액(천원)	비율(%)		비 고
		전체	예산군	
지방비(계)	563,500	100	4.1	
대전광역시비	75,000	13.3		
충청남도비	157,000	27.9		
<b>시·군 비</b>	<b>331,500</b>	<b>58.8</b>	<b>6.9</b>	<b>14개 시군</b>

※ 2024년 산출기준 : 12개월

【붙임 3】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적정성 검토 포함)

 보건복지부 보건행정과 22043	한센병관리 팀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부군수	군 수	결 재	
보 기 결 정 일	5년	이아순	김재민	최승우	김병민		최재서
공 개 부	2023. 10.31.						
공 여	공 개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

결  
재  
요  
지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31.(3년간)
- 위탁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 위탁사무 : 한센병관리 진료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방법 : 민간위탁 - 수의계약
- 예 산 액 : 매년 23백만원(군비 100%)  
- [사업비용] 보수, 의약품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연료비, 업무추진비
- 한센병관리대상자 : 13명



예 산 군  
[보 건 소]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

◇ 한센병관리사업의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I 한센병관리사업 예산 현황

한센병관리 사업(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비고
소계		23,000			23,000	
한센병관리 진료사업	1개소	23,000			23,000	

-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1개사업(한센병환자 진료사업)

## II 관련근거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다. 「지역보건법」 제11조
- 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

## III 그동안 추진상황

-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매년 협약으로 사업 추진

- 위탁기간 : 3년(2024.01.01 ~ 2026.12.31.)
- 소요예산 : 매년 23,000천원(군비 10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
- 위탁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 위탁사무 : 한센병관리사업
  - 한센병관리 진료사업
- 운영현황
  - 가. 다년간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가능
  - 나. 주요사업내역
    - 의료관리 사업 : 한센병 예방 및 치료 효과 제고
    - 대중홍보 사업 : 한센병 인식 개선 및 편견, 차별 해소
    - 이동진료 사업 : 한센사업대상자의 의료형평성 제고
    - 외래진료 사업 : 한센병 및 일반 피부질환 진료
    - 주요실적 검토 (대상기간 : 2023.1. ~ 2023. 10.)

구분	실적
이동진료	(한센사업대상자) 13명 / 연6회 이동진료 중 5회 완료
대중홍보	"복지"지 3,600부 배포, 홍보용 소책자 제작 및 240부 배부, 홍보물 180개 제작, 대중메체 홍보 9회
신환자발견사업	주민검진 150명
재활사업	특수화 6건, 다리의지 1건, 시력개선 3건, 재활 및 간호 실비용구 6건, 한센인 복지증진 후원 11건
외래진료(정밀진찰)	5명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 운영상황 및 환경 검토

- 한센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쾌감 및 불안감 조성으로 일반 의료기관의 한센병 환자 치료 기피로 인한 치료시설의 부재
- 한센병의 지속적인 치료와 홍보를 통해 한센병 퇴치 및 이해증진
- 한센병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보건향상 기여

- 한센병환자의 정기검진 및 치료·투약관리 등으로 전파방지
- 일반피부과 환자 진료를 통한 신환자 발견 사업 추진으로 군민 보건향상 기여

구분	적정성 검토 결과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불 가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적 정
③ 경제적 효율성	적 정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여부	적 정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적 정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를 통해 관리 및 운영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세부내용 참조p14~p15



## 종합 검토 의견

- 한센병관리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한센병관리는 한센병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전문인력 등이 관리 하여야 하고 보건소 자체적인 전문성과 치료장비 운영 등의 한계 가 있으므로
- 한센병관리사업은 한센병 관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세부 내용

###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불가

○ 직영, 일반용역, 사용수익허가 등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 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서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2항에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충청남도 내 14개 시군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임

->한센병에 대한 특수성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한국한센병복지협회의 한센병 환자에 대한 연구 및 치료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타 대학병원 등에도 한센병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중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직영·용역 등의 사무 수행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건 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제6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관련 법령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와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걱정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였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여
  -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재활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바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군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 상시·지속적인 사무에 해당함

## ③ 경제적 효율성 ➡️ 걱정

- 민간위탁을 통해 한센병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고용 필요성이 해소되므로 예산 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이 있음

##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여부 ➡️ 걱정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 의료지식과 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걱정

- 분기별 실적 및 연간 추진 실적 통계를 활용하여 계량적인 성과 측정 가능

##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역보건법」 제11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를 통해 관리 및 운영됨

## VII

## 향후 추진일정

- 2023.11. : 예산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3.11. : 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12. : 위수탁 계약 체결

## 붙임 1 수의계약 사유서

### 민간위탁 수의계약 사유서

위탁사무명	한센병 관리사업
예산 및 위탁기간	금23,000,000원 / 1년
수탁기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준용근거	<input type="checkbo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input type="checkbox"/> 「지역보건법」제11조 <input type="checkbox"/>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 <input type="checkbox"/>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경쟁가능성 분석	한센병을 전문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가진 국내 유일한 민간단체(기관)로 경쟁 가능성 없음.
수의계약 사유	<p>법률에 근거함.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b>법인 또는 단체</b>에 대한 지원]</p> <p>* 한센병을 전문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가진 국내 유일한 민간단체</p>

보건행정과장: 강 정 이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순

담당: 이미순

## **붙임2** 관련법규 및 조례 발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항)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